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92

발의연월일: 2024. 2. 17.

발 의 자:김영진·박희승·조승래

이재정・한병도・박민규

서삼석 • 채현일 • 강유정

임호선 · 허 영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사회 이동성 저하와 저출생, 노인 빈곤과 높은 자살률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. 이러한 심각한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의소득재분배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임.

그러나 현행법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만을 주로 강조하고 있을 뿐, 형평성과 사회정의,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고 있음.

이에 예산 및 재정운용, 성과관리의 원칙에 정부가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, 실제 예산의 편성과 운용, 결산에 있어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 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소득 불 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7조. 제16조, 제85조의3 및 제85조의13 등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건전화"를 "건전화, 형평성 제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 제16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정부는 국민의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제85조의3제1항 중 "책임성"을 "형평성, 책임성"으로 한다.

제4장의2에 제8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5조의13(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)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국가재정 전반의 소득계층별 영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 달성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항제3호의2 및 제8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부터 각각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 정부는 재정운용의 효	등) ①
율화와 <u>건전화</u> 를 위하여 매년	건전화, 형평성 제고
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	
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	
계획(이하 "국가재정운용계획"	
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회계연	
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	
제출하여야 한다.	
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	2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의2.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
	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
	<u>ই</u>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~ ⑪ (생 략)	③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의2. 정부는 국민의 소득 불평

3. ~ 6. (생 략)

제85조의3(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제85조의3(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)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 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 략) <신 설>

등 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.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워칙) ① -----

-----형평성, 책임성-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85조의13(소득 불평등 완화 성 과보고서) ①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7조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과 연계한 국가재정 전반의 소 득계층별 영향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 달성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 성 및 공개,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